

## 무역원활화협정 조문별 해설(요약)

<b>제1조 : 공표 및 정보의 이용가능성</b>	
<b>제1항</b>	<b>공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내용) 수출통관, 수입통관, 반송통관, 환적화물, 통과화물 등과 관련한 각종 절차와 그에 따른 서류, 각종 조세와 부과금의 내용, 통관 또는 통과 과정에서 적용되는 각종 규정과 이러한 통관 또는 통과 과정에서의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등을 신속하게 공표</li> <li>○(시사점) 무역원활화협정은 GATT 제10조보다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하여 공표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통관과 관련된 행정기관에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출애로가 많은 국가에 대하여 관련 정보와 자료를 적정하게 공개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우리 수출기업에게 유리한 거래환경 조성 필요</li> </ul> </li> </ul>	
<b>제2항</b>	<b>인터넷을 통해 이용 가능한 정보</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내용) 수출입 통관 및 물품의 통과절차, 불복절차, 통관 및 통과에 필요한 각종 서식, 질의처 등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에 공지하고, 무역관련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는 것이 장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터넷으로 제공되는 정보는 최신의 내용으로 이를 갱신하고, 실행 가능한 경우 이러한 정보는 공표</li> </ul> </li> <li>○(시사점) 현지지사가 없는 중소 수출기업의 경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정보 및 서류가 인터넷으로 공표되면 수출업체가 절차를 지키거나 서류를 작성하는데 유리하게 되므로 법과 규제의 순응도를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기관에 추가적인 부담은 없을 것으로 보이며, 우리나라는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에 관련 내용이 체계적으로 반영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홍보를 통해 UNI-PASS 수출에도 기여 가능</li> </ul> </li> </ul>	
<b>제3항</b>	<b>질의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내용) 공표되는 정보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에 답하고, 공표되는 정보와 관련하여 필요한 양식 등을 제공하는 질의처 운영</li> <li>○(시사점) 현재 각 부처마다 민원실이 있으나 협정상 단일한 또는 하나 이상의 창구 지정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범정부 성격의 단일창구 마련이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러한 창구는 무역원활화 과제와 관련된 업무를 취급하면서 그와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과 정보를 가장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관에 두되, 각 부처가 이 기관의 협조 요청에 응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li> <li>- 우리나라는 질의처 설립을 처음 제안한 국가로서 질의처와 전자통신기술의 시너지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개도국 지원 필요</li> <li>- 무역업체들의 질의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줄 창구가 지정되므로 특히 중소기업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li> </ul> </li> </ul>	
<b>제4항</b>	<b>통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내용) 협정 제1조제1항에서 규정된 정보가 공표된 공식장소, 제1조제2항에 규정된 정보가 게재되어 있는 웹사이트 주소(URL) 및 제1조제3항에 규정된 질의처와 연락 정보를 위원회에 통지</li> </ul>	

- (시사점) 기업차원에서는 무역관련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정부차원에서는 수출입 관련 법과 규제의 준수도를 제고할 수 있는 윈-윈 규정
  -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정부기관, KOTRA, 또는 한국무역협회(KITA)에서 정보를 수집·발간하거나 이러한 URL을 모은 허브 사이트 구축 필요

## 제2조 : 의견제시 기회, 시행전 정보 및 협의

### 제1항 의견제시 기회 및 시행 전 정보

- (내용) 이해당사자들에게 상품의 통관 및 통과와 관련한 법 및 각종 규정과 개정 되는 법 및 규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기회 제공
  - 새로운 또는 개정된 법 및 규정이 있는 경우 시행 전 최대한 신속하게 이해 관계자들이 알 수 있도록 공표하거나, 이에 관한 정보가 달리 공개되도록 보장
- (시사점) 수출입절차 관련 법과 규제의 변화에 대한 정보와 자료의 입수가 더욱 용이해지고, 법과 규제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됨으로써 수출입 및 국제경쟁환경이 유리하게 조성
  -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KOTRA 또는 KITA 차원에서 이러한 변화를 허브 사이트를 통해 정리하고 주요국의 변경사항을 통보할 수 있는 메커니즘 구축 필요
  - 범국가적으로 주요 무역상대국의 신규 법안이나 규제안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국내기업을 대신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채널 구축 필요

### 제2항 협의

- (내용) 국내의 국경기관과 무역업자(또는 기타 이해당사자)간 정기적인 협의를 제공
- (시사점) 통관 및 통과와 관련된 국경기관들은 나름대로 이해당사자와 협의채널을 가지고 있으나 보다 정비되고, 통합된, 그리고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협의체를 마련할 필요
  - 정기적인 협의는 국경기관간 협조와 정부기관과 이해당사자간의 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무역원활화의 효과적인 이행에 기여

## 제3조 : 사전심사

- (내용) 상품의 품목분류와 원산지에 대한 사전심사제도를 의무화, 관세평가·감면세·관세할당을 포함한 쿼터 등에 대한 사전심사제도의 운영 권장
  - 신청요건·결정기한·유효기간 등은 공표되어야 하며, 수출입자 또는 정당한 이유를 가진 모든 사람 또는 그 대리인이 신청 가능
  - 결정을 통보한 경우 그 근거가 되는 법, 사실 또는 상황에 변동이 없는 한, 사전심사는 결정 후 합리적인 기간 동안 유효
  - 사전심사 결정은 신청인에 대해서만 국내에서 구속력이 있으며, 서면 요청이 있는 경우, 사전심사 결정 또는 사전심사결정을 취소, 변경, 또는 무효화하는 결정에 대한 재심 보장
- (시사점) 아국은 품목분류와 원산지, 관세평가, 감면세와 관련 사전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권장사항인 관세할당을 포함한 쿼터의 요건과 관련한 사전심사제도는 없음
  - 가능한 권장사항인 쿼터의 요건 등에 대한 사전심사제도 신설이 필요하며, 품목분류, 관세평가, 감면세와 관련한 사전심사결과에 대한 재심청구를 전반적으로 인정할 필요
  - 품목분류나 원산지규정, 관세평가와 관련된 사전심사는 개발도상국 뿐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그 효용가치가 높다는 점에 유의

**제4조 : 불복 또는 재심청구 절차**

- (내용) 세관의 행정적 결정에 대해 상급기관이나 독립된 행정기관, 또는 사법기관에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불복을 청구하거나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
  - 세관 이외의 여타 국경기관에 의해 내려진 행정적 결정에도 이러한 불복절차가 적용되도록 권장
- (시사점) GATT에서 규정한 내용을 재강조한 것으로 정부의 추가적 의무나 부담은 없으며, 수출입업자에게 부여되는 추가적 권리도 없음
  - 항소절차는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우리 수출입기업에 법적/기술적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 모색 필요

**제5조 : 공정성, 비차별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타 조치**

**제1항 | 제고된 통제 또는 검사의 통보**

- (내용) 사람과 동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보호 목적으로 실시되는 국경에서의 통제 또는 검사가 위험관리에 기초하여 실시되도록 하고, 제한된 반입지점에서만 통일되게 적용되도록 통보 또는 지침을 마련
  - 통보 또는 지침을 야기한 상황이 종료되거나 덜 무역제한적인 방식으로 다루어질 수 있는 경우 해당 통보 또는 지침을 신속히 종료 또는 정지하고, 그 사실을 신속히 공표하거나 수출국 또는 수입자에게 통보
- (시사점) 우리나라가 농산품 수입에 부정적이라는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하여 농산품 수입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객관적인 근거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위험이 사라진 경우 수입제한 조치를 신속하게 철회하도록 노력할 필요

**제2항 | 유치**

- (내용) 수입신고된 상품이 세관 또는 기타 권한 있는 당국의 검사를 위해 유치된 경우 해당 물품의 통관책임자인 운수업자 또는 수입자에게 신속히 통보
- (시사점) 우리나라는 수입통관과정에서 물품을 유치하는 경우 관계 당사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협정의 발효로 인한 추가적 부담은 없음
  - 수출입업체의 경우 상대국 세관이 물품을 유치하는 경우, 통보받을 권리를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현재 이러한 통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국가의 경우 협정이 발효된다 하여 더 신속한 통보가 이루어질지는 의문

**제3항 | 시험절차**

- (내용) 수입신고된 상품에 대해 시험을 수행하는 경우 시험을 수행하는 기관과 주소를 공표하거나 해당 수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견본에 대한 1차 시험 결과 불리한 결과가 나타나고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2차 시험기회를 부여하고, 적절할 경우 그 결과를 상품의 반출 및 통관에 고려
- (시사점) 관세율의 적용을 위한 품목분류 또는 각종 개별법령에 의한 수입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과정에서 불리한 결과가 나온 경우 재시험을 요청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무역업체의 권익 보호에 기여
  - 우리나라는 수입상품에 대한 각종 시험/검사에서 재시험을 요청할 기회를 주고 있지 않으므로 관련법령의 개정을 통해 보완할 필요

**제6조 : 수출입관련 수수료 및 부과금에 관한 규율**

제1항	수입 또는 수출에 대해 또는 이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수수료 및 요금에 관한 일반 규율
<p>○(내용) 상품의 수출입 또는 이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모든 수수료 및 부과금은 그러한 수수료 및 부과금의 이유, 담당 당국 그리고 지급될 시기 및 방법을 공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새로운 또는 개정된 수수료 및 부과금의 공표와 그 시행 사이에는 적절한 기간이 주어져야 하며, 새로운 수수료 및 부과금은 이에 대한 정보가 공표될 때까지 적용되지 아니함</li> <li>- 수수료 및 부과금의 수와 종류를 축소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함</li> </ul> <p>○(시사점) 무역상품에 부과되는 부담금 성격의 각종 수수료와 요금이 WTO 차원에서 경감되는 방향으로 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출물품의 경우 상대국에서 각종 수수료와 요금이 투명하게 관리되고, 경감될 수 있으므로 비용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수수료 및 요금에 대한 투명성의 확대는 일부 개발도상국의 통관과 관련된 부패관행을 감소시켜 무역 환경이 개선될 전망</li> </ul>	
제2항	수입 또는 수출에 대하여 또는 이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수수료 및 부과금에 관한 특별 규율
<p>○(내용) 수출입 상품에 대해 세관처리를 위한 수수료 및 부과금을 부과하는 경우 그 수준은 제공된 서비스의 대략적 비용에 대한 금액으로 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수료 및 부과금이 특정 수입 또는 수출활동과 연결되도록 요구되어서는 아니 됨</li> </ul> <p>○(시사점) 통관절차와 관련하여 징수되는 수수료 및 부과금의 투명성이 향상되고, 통관과정에서 다양하게 징수되는 서비스료의 수준도 다소 감소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수료나 부과금에 큰 비중을 두고 과다하게 부과하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인 효과는 크지 않을 전망</li> </ul>	
제3항	처벌 규율
<p>○(내용) 관세법, 규정 또는 절차 요건 위반에 대한 처벌은 그 법에 따른 위반의 책임이 있는 당사자에게만 부과되도록 하고, 처벌의 정도도 사건의 사실 및 상황에 따라 결정되며 위반의 정도와 심각성에 상응하도록 하여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처벌을 받는 당사자에게 위반의 성격, 위반에 대한 벌금의 액수와 범위가 규정된 적용 가능한 법, 규정 또는 절차를 명시한 서면 설명을 제공</li> <li>- 처벌대상자가 적발 이전에 자수하거나 신고한 경우 잠재적 경감요소로서 고려하도록 장려</li> </ul> <p>○(시사점) 우리나라는 이미 관련 내용을 충실히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출업체가 외국에서 처벌대상이 되는 경우 이 규정에 따라 재심을 요구할 수 있지만, 이를 효과적으로 사용할지에 대해서는 국가별로 다를 것으로 전망</li> </ul>	
<b>제7조 : 상품의 반출 및 통관</b>	
제1항	도착전 처리
<p>○(내용) 수입물품이 도착하였을 때 신속하게 반출이 허용될 수 있도록 상품이 도착하기 전에 통관에 필요한 서류 및 그 밖의 요구되는 정보의 제출을 허용하는 절차를 마련</p>	

<p>○(시사점) 우리나라는 사전수입신고제도를 이미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규정에 따른 정부의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할 여지는 없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출물품의 경우 무역업체들은 이와 같은 제도가 없던 나라에 이 제도가 도입되는 경우 물품의 신속한 반출로 비용절감 효과를 볼 수 있을 전망</li> </ul>	
<b>제2항</b>	<b>전자적 지급</b>
<p>○(내용) 실행 가능한 한도 내에서 통관과정에서 부과되는 제세, 수수료, 부과금의 전자적 지급에 대한 선택권을 허용</p> <p>○(시사점) 우리나라는 이미 전자지급이 시행되고 있으므로 이 규정으로 인한 정부의 추가 부담은 없을 것으로 예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납세와 관련한 전자지급제도는 국가마다 다를 수 있고, 요구사항도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정부기관, KITA, 또는 KOTRA 등이 주도하여 다른 나라의 전자지급제도 현황을 파악하고, 그 특징과 유의사항들을 알려주어 수출기업을 지원할 필요</li> </ul>	
<b>제3항</b>	<b>반출과 관세, 조세, 수수료 및 부과금의 최종 결정의 분리</b>
<p>○(내용) 수입물품에 대한 제세와 수수료, 부과금 등이 신속하게 결정되기 어려운 경우 최종 결정 전에 상품의 반출을 허용하는 절차를 마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출을 허용하는 경우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벌금형 또는 과태료 부과 요구되는 위법사항이 감지된 경우 부과될 수 있는 벌금과 과태료에 대한 보증 요구도 가능</li> </ul> <p>○(시사점) 우리나라는 오래 전부터 수입신고수리전반출제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규정으로 인한 정부의 추가 부담은 없을 전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직까지 이러한 제도를 인정하지 않는 나라도 있으므로 이 제도가 도입되는 경우 우리나라 수출업체들이 해외 통관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전망</li> </ul>	
<b>제4항</b>	<b>위험관리</b>
<p>○(내용) 가능한 한도에서 자의적이거나 불공정한 차별, 또는 국제 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방식으로 위험관리시스템을 채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험관리는 적절한 선별 기준을 통한 위험 평가에 기초하여야 하며, 그러한 선별 기준으로 HS 코드, 상품의 성격과 기술, 원산지 국가, 상품이 선적된 국가, 상품의 가치, 무역업자의 준수 기록, 그리고 운송수단의 종류를 포함</li> </ul> <p>○(시사점) 우리나라는 상당히 정교한 위험관리 기법을 이미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규정으로 인한 정부의 추가부담은 제한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험이 낮은 상품에 대한 통관속도가 전반적으로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따른 수출기업의 편익 증대 예상</li> </ul>	
<b>제5항</b>	<b>통관사후심사</b>
<p>○(내용) 상품의 반출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 사후심사제도를 적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후심사대상은 위험관리에 입각하여 선별하고, 사후심사는 투명한 방식으로 수행</li> <li>- 심사결과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 그 결과의 이유와, 개인의 권리와 의무 등을 심사대상자에게 통보</li> </ul> <p>○(시사점) 우리나라는 이미 수출입물품에 대해 사후심사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리 정부의 추가 부담은 없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입국이 협정에 따라 사후심사를 도입하는 경우 화물의 반출시간이 상당 수준 빨라져 수출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li> </ul>	

제6항	평균반출시간 측정 및 공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내용) 정기적으로, 그리고 일관된 방식으로 수입물품의 평균 반출시간을 측정하고 공표하도록 장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균 반출시간 측정에 이용된 방법론, 확인된 병목점, 그리고 효율성에 대한 모든 결과적인 영향을 포함한 평균반출시간 측정 경험을 공유하도록 장려</li> </ul> </li> <li>○(시사점) 이 규정은 우리나라가 2005년 제안한 내용으로, 우리나라는 법적 근거를 따로 두고 있지는 않으나 관세청이 수시로 수입물품의 평균반출시간 등을 측정하여 공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적 근거가 없고 정기적으로 공표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의의가 낮아지는 측면이 있으므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공표함으로써 다른 국가들도 이와 같이 하도록 유도할 필요</li> <li>- 협정에 따라 반출시간을 측정·공표하면 각국이 얼마나 충실히 무역원활화 조치를 도입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통관과정에서의 무역원활화 작업이 부진한 국가들의 제도개선에 상당한 동기부여가 될 것으로 전망</li> </ul> </li> </ul>	
제7항	공인된 사업자를 위한 무역원활화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내용) 특정 기준을 충족시키는 사업자에게 수입, 수출 또는 통과 형식 및 절차와 관련된 추가적인 무역원활화 조치를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공되는 무역원활화조치는 ① 낮은 서류 및 데이터 요건, ② 낮은 비율의 물리적 조사 및 검사, ③ 신속한 반출시간, ④ 관세, 조세, 수수료 및 부과금의 납부 유예, ⑤ 종합 보증 또는 축소된 보증의 사용, ⑥ 모든 수입 및 수출에 대한 단일 세관 신고, ⑦ 사업장 또는 세관에 의해 승인된 장소에서 상품 통관 중 최소한 3가지를 포함</li> <li>- 국제표준에 기초해 공인된 사업자 계획을 발전시키도록 장려되며, 사업자에게 제공되는 무역원활화조치를 증진시키기 위해 다른 회원국들에게 인가된 사업자 계획의 상호인정을 협상할 가능성을 제공</li> </ul> </li> <li>○(시사점) 2014년 6월 현재 우리나라는 수출업체, 수입업체, 중소수출업체, 관세사, 항공사, 선박회사, 화물운송 주선업자, 하역업자, 보세운송업자, 보세구역운영자인 등 539개 업체에 대해 공인된 사업자로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 일본, 싱가포르, 뉴질랜드, 캐나다, 중국, 홍콩, 멕시코(8개국)와 AEO MRA를 체결하였고 인도, EU, 터키, 대만, 페루, 콜롬비아, 요르단 등과 AEO MRA 체결을 위한 협의 또는 공동연구를 진행중</li> <li>- 기업 입장에서는 공인된 사업자로 인정되는 경우 수입뿐 아니라 수출에서도 상당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li> </ul> </li> </ul>	
제8항	특송화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내용) 세관통제를 유지하면서 희망자들에게 항공으로 수입되는 특송화물의 신속한 반출을 허용하는 절차를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송화물의 반출을 위한 서류 요건을 최소화하고, 가능한 한 특정 화물에 대한 단일 정보에 근거하여 반출을 허용, 예외가 적용되는 물품을 제외하고, 면세되는 소액화물의 범위와 관세부과 대상 금액을 규정</li> </ul> </li> <li>○(시사점) 우리나라의 경우 협정의 관련 규정이 정부에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 특송산업이 대부분이 국제화되지는 못하고 있으므로 국내 특송업체들이 국제화를 추진할 때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li> </ul> </li> </ul>	

제9항	부패성 상품
<p>○(내용) 자연적 특성으로 급속한 부패가 일어날 수 있는 부패성 상품에 대해 모든 규제요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손실 또는 품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최단시간 내에 이러한 상품의 반출을 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필요할 경우 세관 등 관련 기관의 근무시간 외에도 부패성 상품의 반출을 허용</li> <li>- 반출을 기다리는 동안 부패성 상품이 보관될 수 있는 적절한 저장 시설을 마련하거나 수입자가 마련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모든 검사 일정을 잡을 때 부패성 상품에 적절한 우선권을 제공</li> </ul> <p>○(시사점) 협정의 이 규정이 각국에서 현실화될 경우 신선식품의 국제교역이 상당 수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나라의 경우 이 규정의 취지에 합당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이를 보다 명백하게 보여주는 의미에서 부패성 상품에 대한 수출입시의 신속통관 규정을 구분, 보완하여 정해 두고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li> </ul>	
제8조 : 국경기관 협력	
<p>○(내용) 국경 통제 및 상품의 수입, 수출 및 통과를 다루는 절차를 책임지는 당국 및 기관이 무역을 원활화하기 위해 서로 협력하고 그들의 활동을 조정하도록 보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경 교차지점에서의 절차를 조정할 목적으로 국경을 공유하는 회원국과도 상호 합의된 조건하에 근무시간, 절차와 형식의 정합 등에 협력</li> </ul> <p>○(시사점) 법률에서 요구되는 통관요건을 확인하고 조치해야 하는 국경절차를 이행함에 있어 관련되는 기관간의 긴밀한 협력은 무역원활화를 위해 불가결한 요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나라는 육접국경을 통한 교류가 사실상 제한되어 있으므로 이 규정이 특별한 의미를 갖기는 어려우나 일본, 중국 등 1일 운송권에 들어 있는 아시아 국가들의 경우 항구 및 공항 관세 통제시설간 협력을 강화하면 원만하고 마찰이 없는 통관절차 진행이 가능</li> <li>- 우리나라 수출상품의 경우 육로를 통한 국경이동시 그 절차를 원활하게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li> </ul>	
제9조 : 수입을 위한 상품의 세관 통제하의 이동	
<p>○(내용) 모든 규제조건이 충족됨을 전제로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의 통관을 위한 수입국내의 보세운송을 허용</p> <p>○(시사점) 우리나라는 일찍부터 보세운송제도를 운영해 왔기 때문에 이 규정에 따른 추가적인 부담이나 국내적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출상품의 경우 국가에 따라 보다 원활한 통관절차 이행효과 기대 가능</li> </ul>	
제10조 : 수출입 및 통과 관련 절차	
제1항	형식 및 서류요건
<p>○(내용) 통관 및 통과 형식의 횡수 및 복잡성을 최소화하고, 관련 서류요건을 줄이고 간소화하기 위해 그 형식과 서류 요건을 검토하며, 검토 결과에 근거하여 상품의 신속한 반출, 통관과 무역업자 등의 시간과 비용의 감축, 둘 또는 그 이상의 대안적 조치가 이용 가능한 경우 가장 덜 무역제한적인 조치의 선택 등을 보장</p> <p>○(시사점) 우리나라는 수입, 수출 및 통과 건별로 신고, 또는 납세하는 제도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원칙하에서 신속통관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하고 있음</p>	

- 신고방법은 일정기간별로 모아서 하는 '주기적신고'도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통관 및 통과의 형식이 더욱 간소화 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갈 필요

**제2항 사본의 수용**

- (내용) 가능한 한 통관 또는 통과에 요구되는 서류의 종이 또는 전자 사본을 수용하도록 노력하고, 정부기관이 그러한 서류의 원본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경우 가능한 한 그 원본 서류 대신에 원본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으로부터 종이 또는 전자 사본을 수용
  - 수입요건으로 수출 회원국 세관 당국에 제출된 수출 신고서의 원본 또는 사본을 요구하는 것은 불가
- (시사점) 우리나라는 전자문서의 제출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종이서류가 제출되어야 하는 경우에도 사본의 제출을 광범하게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규정으로 인한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하거나 수출입업체의 편의가 증진될 가능성은 낮음
  - 많은 개발도상국들에서는 아직 전자문서 제출이 허용되지 않거나, 사본을 불인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수출업체에 대한 무역환경 개선 측면에서 정부는 이들 국가와의 협력과정에서 이 규정을 적절히 활용, 전자문서 제출과 사본제출을 인정하도록 노력할 필요

**제3항 국제표준의 사용**

- (내용) 수입, 수출, 또는 통과 형식 및 절차의 근거로 관련되는 국제표준이나 그 표준의 일부를 사용하도록 권장되며, 국제기구에 의한 관련 국제표준의 준비 및 주기적 검토에 참여하도록 권장
  - 위원회는 국제표준의 이행에 관한 관련 정보 및 모범 관행을 회원국 간에 공유하기 위한 절차를 개발하며, 회원국에게 특별히 가치가 있는 특정 표준을 규명
- (시사점) 우리나라의 통관 관련 문서는 국제기준을 충실히 따를 뿐만이 아니라, 전자서류는 문서서류와 똑같은 형태를 사용하여 문서서류 작성에 익숙한 신고자는 전자서류 작성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 규정으로 인해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하거나 기업의 편의가 증진될 가능성은 낮음
  - 많은 개발도상국이 국제표준과는 거리가 있는 통관절차를 운영하고 있음에 비추어 이 규정은 무역환경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
  - 국제표준과 다른 WTO 회원국들이 신고서에서 수집하는 정보와 문서의 형태가 같은 경우, 기업들의 신고 및 서류 작성에 따르는 부담이 크게 감소

**제4항 싱글윈도우**

- (내용) 무역업자가 상품의 수입, 수출, 또는 통과를 위한 서류나 자료 요건을 단일 접수 지점을 통해 참여 당국 또는 기관에 제출할 수 있게 싱글윈도우를 설치 또는 유지
  - 제출된 서류나 자료의 검토 결과는 싱글윈도우를 통해 신청인에게 통보
  - 가능하고 실제적인 한도에서, 싱글윈도우를 지원하기 위해 정보 기술을 사용하여야 하며, 싱글윈도우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위원회에 통보
- (시사점) 개도국의 경우 싱글윈도우를 구축하는 데에 더욱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IT 강국인 우리나라가 개도국의 싱글윈도우 구축을 적극 지원할 필요
  - ODA를 통한 시스템 기부나 증정, 저금리를 통한 시스템 구매지원 등을 적극 검토하여 우리나라 기준이 국제표준으로 인정되어 수출기업의 무역환경 개선 도모



제5항	선적전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내용) 품목분류나 관세평가와 관련하여 선적전검사를 요구하지 아니하며, 그 밖의 종류의 선적전검사를 사용함에 있어 새로운 요건을 도입 또는 적용하지 않도록 권장</li> <li>○(시사점) 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대해 선적전검사를 요구하는 경우가 없으므로 이 규정으로 인해 추가적인 부담이나 무역업체의 편익 증가는 기대하기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류보안과 관련한 선적전검사는 이 조항에서 언급하지 않았으므로 특히 미국과 같은 수출대상국의 요구에 의해 수출물품에 대한 물류보안 차원의 선적전검사는 강화될 가능성도 있음</li> </ul> </li> </ul>	
제6항	관세사의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내용) 관세사의 의무적 사용제도를 채택하지 아니하고, 관세사 사용에 관한 조치들을 통보·공표하며, 관세사의 면허와 관련하여 투명하고 객관적인 규칙을 적용</li> <li>○(시사점) 우리나라 법령은 통관과정에서 관세사의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으나 관세사가 기업에 높은 부가가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세사제도에 대한 합리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할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세사의 의무적 사용을 규정하고 있는 국가가 의무적 사용을 폐지하는 경우 수출업체에 다소 유리한 무역환경이 조성될 수 있으나 그 편익은 크지 않을 전망</li> </ul> </li> </ul>	
제7항	공통 국경절차 및 통일된 서류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내용) 상품의 성질 및 종류, 또는 그 운송수단에 근거하여 절차 및 서류요건을 달리하는 것 등 열거된 합리적 차별을 제외하고는 자신의 영역에 걸쳐 상품의 반출 및 통관을 위한 공통의 세관절차 및 통일된 서류요건을 적용</li> <li>○(시사점) 국내법상 통관과 관련한 절차나 서류요건에 합리성이 결여된 어떤 차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규정으로 인한 정부의 추가적인 부담이나 수출입업체의 편익 증진은 없을 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만, 집행상의 통일성 문제는 유의하여야 하며, 특히 개도국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수출업체에 대한 지원차원에서 이와 관련한 자료를 수집하고 해당국과의 세관협력회의 등을 통해 이를 해소하도록 노력할 필요</li> </ul> </li> </ul>	
제8항	거부된 물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내용) 수입을 위해 제시된 상품이 기술된 위생 또는 식품위생 규정 또는 기술 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권한있는 당국에 의해 거절되는 경우 수입자가 거부된 상품을 반송할 수 있도록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입자가 합리적인 기간 내에 반송하지 못하는 경우, 권한있는 당국은 해당 상품을 다루기 위해 필요한 조치 가능</li> </ul> </li> <li>○(시사점) 우리나라는 수입이 불가능하거나 수입이 불필요한 경우 그 물품을 수출자 또는 수출자에 의해 지정된 다른 사람뿐 아니라 제3국의 제3자에게 반송하는 것도 광범위하게 허용하고 있으므로 이 규정으로 인한 정부의 부담이나 무역업체의 편익증진은 발생하지 않을 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관이 불허된 물품에 대한 반송을 불허하는 국가도 있으므로 수출업체의 경우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li> </ul> </li> </ul>	
제9항	상품의 일시 반입/역내 및 역외 가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내용) 일정기간 내에 원상태로 재수출될 예정인 물품에 대해 조건부감면세 반입 허용</li> </ul>	

- 상품의 역내 및 역외가공을 허용하며, 역외가공을 위한 수출시 감면세와 수출이 예정된 역내가공 상품 수입시 감면세 또는 환급을 허용
- (시사점) 우리나라는 이미 일시반입물품이나 해외임가공물품, 재수출물품, 재수입 물품 등에 대해 관세법상 감면세조치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규정으로 인해 정부에 추가적인 부담이나 기업에게 추가적 편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음
- 해외직접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국가에 따라서는 이 규정으로 인해 해외 임가공활동이 훨씬 편리해지고 비용도 줄어드는 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제11조 : 통과와 자유

- (내용) 통과화물과 관련한 규정, 형식 또는 절차는 가능한 한 덜 무역 제한적인 방식으로 적용되어야 함
- (시사점) 우리나라는 통과하는 화물이나 환적 또는 복합환적하는 화물에 대해 최소의 서류를 요구하고,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검사하지 않으므로 이 규정으로 인해 부담이 추가되거나 무역업계에 추가적인 편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음
- 수출물품을 외국에서 통과하는 경우 이에 대해 제약을 받거나 담보 등을 요구하는 국가들도 있으므로 이러한 관행이 시정될 경우 수출업체에 편익을 증가 예상

### 제12조 : 세관협력

#### 제1항 | 준수 및 협력을 촉진하는 조치

- (내용) 수입자들이 적절한 상황에서 벌금 없이 스스로 정정하도록 허용하는 자발적 준수를 장려하며, 비준수 무역업자들에 대해 보다 강력한 조치들을 하기 위한 준수 조치들을 적용
- (시사점) 이 규정으로 인해 정부에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하거나, 무역업체에 어떤 편익이 추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

#### 제2-11항 | 정보의 교환 등

- (내용) 수입 또는 수출 신고를 검증하기 위하여 수입 또는 수출 신고에 제시된 특정한 정보, 또는 신고 정보를 교환(제2항)
  - ① 공익에 반하는 경우, ② 정보의 반출을 금지하는 경우, ③ 법 집행을 방해하거나 진행 중인 행정적 혹은 사법적 조사, 기소 또는 소송을 방해하는 경우, ④ 비밀 정보 또는 개인 자료의 수집, 보호, 사용, 공개, 보유 및 폐기를 규율하는 국내법 및 법제도에 의해 동의가 요구되거나 그러한 동의가 없는 경우, ⑤ 서류 보관을 위한 법적 요건이 만기된 후 정보 요청을 받은 경우, 요청받은 내용의 부분 또는 전부를 연기하거나 거절(제7항)
- (시사점) 우리나라는 상호주의적 입장에서 외국세관과 협력활동을 강화해 왔으므로 세관간의 협력에 기본적으로 어려움이 크지는 않을 것임
- 과도한 정보나 자료가 요구되는 경우 응하기 어려울 것이며, 비밀정보 등과 관련된 자료의 요구는 제7항에서 규정한 범위내에서 제한적으로 협력 가능

#### 제12항 | 양자 및 지역협정

- (내용) 회원국은 안전하고 신속한 방식을 포함하여 세관 정보 및 자료를 공유 또는 교환하기 위해 양자, 복수국간, 또는 지역 협정을 도입 또는 유지할 수 있음
- (시사점) FTA 협상 시 필요한 경우 이 규정에 근거하여 정보 교류에 대한 사항을 포함시키는 것이 가능

**제13조 내지 제22조 : 개도국 및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별 및 차등대우 규정**

- (내용) 개발도상국 및 최빈개발도상국의 이행을 위해 A, B, C유형을 정하고 동 유형에 포함시킬 규정들을 스스로 지정(제14조)
  - ① (A유형) 협정 발효 시 이행 ② (B유형) 과도기간 경과 후 이행 ③ (C유형) 과도기간 경과 후 이행, 능력배양을 위한 원조 및 지원 제공을 통한 이행 능력 획득을 요하는 규정
  - C유형 규정을 이행하기 위한 능력이 부족한 경우 이행할 능력이 없음을 위원회에 통보하고, 위원회는 이행능력 촉진 조치(제18조)
  - 발효 후 2년(최빈개발국은 6년) 동안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에 의해 구체화되고 적용되는 GATT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은 개발도상회원국이 A유형으로 지정한 모든 규정에 관한 분쟁 해결에 비적용(제20조)
- (시사점) 우리나라는 협정에서 요구하는 거의 모든 조건들을 충족하고 있어 다른 WTO 회원국들은 무역원활화에 있어 우리나라가 적극적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으므로 무역원활화와 관련 ODA 금액을 늘려 적극 지원할 필요
  -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고려 ODA를 통해서 전자통관시스템의 수출을 추진하는 경우 최빈개발도상국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
  - 무역원활화협정으로 개도국의 방향이 제시된 만큼 이들 국가에 주재관을 파견하여 우리기업의 통관애로를 해결하고 동시에 해당국의 법과 제도를 협정이 지향하는 방향과 일치하도록 개선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

**제23조 : 기관협정**

- (내용) WTO에 무역원활화위원회를 설립하고 협정의 이행 및 집행과 관련한 조언과 불필요한 노력의 중복의 회피를 보장하기 여타 국제기구와 긴밀한 협력 유지
  - 무역원활화에 관한 국별 위원회를 운영하고 이 협정 규정의 국내적 조정 및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기존의 메커니즘을 지정
- (시사점) 우리나라는 개도국에서 선진국이 된 경험이 있고, 세계에서 가장 선진화된 통관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는 무역원활화 선도국으로 WTO의 다른 어느 위원회나 어느 영역에서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국별 무역원활화위원회의 핵심 업무는 통관절차의 지속적인 개선과 관련이 있으므로, 통관절차를 담당하는 관세청에 동 위원회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

**제24조 : 최종규정**

- (내용) 모든 규정은 모든 회원국에게 구속력이 있고, 회원국은 이 협정을 발효일부터 이행하여야 하며, 개발도상국 및 최빈개발도상국은 제2절에 따라 이행
  - 분쟁해결 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에 의해 구체화되고 적용되는 GATT 1994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은 이 협정상 협의 및 분쟁해결에 대해 적용
- (시사점) 무역원활화 협상을 주도해 온 국가로서 무역원활화협정을 충실히 발효시키고 이행할 필요